



■ 김부겸 의원의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환영 성명 (2019.5.15.)

김부겸 의원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학력·학 벌로 인한 차별 막아야”, 행안부장관 이임 직후,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발의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함.
- ▲ 이 법안은 모집·채용 등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금지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9조)고 규정하고 있음.
- ▲ 김부겸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
- ▲ 이로써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공동발의),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전 바른정당, 현 무소속/전 국민의당, 현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공동발의),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 내용을 담은 제정 법안 총 5개가 89명에 의해 발의되었음. 이렇게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에 의해 유사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크기 때문임.
- ▲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올해 내에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2019년 5월 9일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외교통일위원회)을 포함한 12명의 국

회의원은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부겸(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김동철(바른미래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문희상(무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정재호(더불어민주당)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김부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이임 직후 발의한 1호 법안이라, 그 중요성에 대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법안은 ‘모집·채용 등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금지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김부겸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러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모집·채용 등을 포함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의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 요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학력·학벌 문제 포함)을 느끼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능력중심고용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김부겸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발의하여,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 결과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지역인재 균형 채용에 대한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지방간 지역 불균형

완화 및 지방대학 활성화 측면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학벌로 인한 인사관리의 폐단을 막고, 인사 상 기회의 균등함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김부겸 의원의 이번 발의안은 2016년~2017년에 발의된 4건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들에 이은 5번째 제정 법률안임.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법령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령들은 학력이나 출신학교 요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선언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김부겸 의원 안까지 5건의 제정안이 총 89인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입니다.

■ 이에 사교육걱정은 20대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올해 내에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학력과 출신학교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 사회와 채용 영역에서는 이것을 왜곡하거나 과대평가하여 활용하여 왔습니다. 어떤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은 대학교 입학성적과 고교까지의 특정 교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과정을 전혀 보여주지 않음에도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능력, 혹은 직무 능력으로 일반화하여 평가하는 채용 관행을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듯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육이 대학 진학에 맞춰서 왜곡되지 않는 사회, 불필요한 사교육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사회,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 개인의 능력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20대 국회는 불합리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9. 5.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중(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참고]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한 20대 국회 발의안(제정안) 비교

의안명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6. 9. 2.	2016. 9. 2.	2016. 11. 28.	2017. 2. 10.	2019. 5. 9.	
발의자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총18인 -더불어민주당(18인)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총 24인 -더불어민주당(20인) -국민의당(3인) -정의당(1인)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총 10인 -새누리당(9인) -국민의당(1인)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총 25인 -바른정당(24인) -국민의당(1인)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총 12인 -더불어민주당(10인) -바른미래당(1인) -무소속(1인)	
주요 내용	대상	학력과 출신학교	학력(출신학교)	학력	학력과 출신학교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범위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교육기관의 교육(입시) 라. 직업훈련 ☞고용과 교육(입시)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 복리후생, 퇴직·해고, 교육·훈련, 승진, 전보·배치) 나. 근로자의 교육·훈련 ☞공공기관의 고용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 복리후생, 퇴직·해고, 교육·훈련, 승진, 전보·배치)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직업교육훈련 ☞고용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승진·전보·배치)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교육기관교육(입시) 라. 직업교육훈련 ☞고용 일부와 교육(입시)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금품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승진, 퇴직·해고)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직업교육훈련 ☞고용
	차별 금지 행위 세부 내용	[고용] 1. 학력등(학력·출신학교)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응시서류에 학력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3. 학력등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면접과정에서 학력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력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사용자는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고용] 1. 공공기관은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함. ③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기업은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②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	사용자는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p>정보를 제공받는 행위</p> <p>[교육(입시)] 1.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2.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입학전형절차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p>			<p>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③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p> <p>[교육(입시)] 교육기관의 장은 ①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을 하려는 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② 학생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p>	
	<p>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p>	<p>피해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 /학력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p>	<p>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p>	-	<p>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p>
권리 구제	<p>불리한 처우의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p>	<p>불이익 조치의 금지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p>	<p>불이익 조치의 금지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p>	-	<p>불이익 조치의 금지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p>

	<p>벌칙</p>	<p>양벌규정 있음.</p> <p>1. 구제절차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2.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3.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p>	<p>양벌규정 있음.</p> <p>1. 구제절차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2.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3.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p> <p>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최종학력 등을 요구한 자</p> <p>2.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p> <p>3. 이 법 시행에 따른 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4. 이 법 시행에서 필요한 경우 시설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양벌규정 있음.</p> <p>1. 구제절차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2.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3.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p>
<p>제정안의 장·단점</p>	<p>-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 모두 금지</p> <p>-교육(입시)영역 있음</p> <p>-차별을 막기 위한 금지 행위의 세부내용 있음</p>	<p>-학력이 기재된 자료 제출 금지로 출신학교 차별까지 금지 가능</p> <p>-교육(입시)영역 없음</p> <p>-고용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차별 금지 행위의 세부내용 없음.</p> <p>-공공기관 고용에 한정됨.</p>	<p>-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한 언급 없음.</p> <p>-교육(입시)영역 없음</p> <p>-고용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차별 금지 행위의 세부내용 없음.</p>	<p>-직무능력중심 채용, 직무능력개발 지원, 직무능력 촉진을 위한 사업 강조</p> <p>-인권위를 통한 진정이나 시정명령을 포함한 구제조치 조항은 없고 차별 행위 시 과태료 부과로 바로 이어짐.</p> <p>-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p> <p>-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p>	<p>-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 모두 금지</p> <p>-교육(입시)영역 없음</p> <p>-고용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차별 금지 행위의 세부내용 없음.</p> <p>-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금지를 위해 개정법안 동시 발의</p>	<p>-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 모두 금지</p> <p>-교육(입시)영역 없음</p> <p>-고용 전반을 다루고 있으나 차별 금지 행위의 세부내용 없음.</p> <p>-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금지를 위해 개정법안 동시 발의</p>